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091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,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한 정액세율 인상 및 등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취득시기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으로 간략하게 정비하고,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5조).
- 나.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을 현행 3,000원부터 18,000원 까지에서 4,500원부터 27,000원까지로 인상함(안 제9조).
- 다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, 양도소 득)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함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취득한 날부터 60일 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"를 "법 제20조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: 골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 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세율	27,000원	18,000원	12,000원	9,000원	4,500원

제8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장 지방소득세

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-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-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혅 颜 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 는 상속개시일부터, 실종으로 인 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 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・구청장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1.~11. (생략)

12. 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 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 설 이용회원권: 골프장·승마 장·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 설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가 및 연간이용일수

②~⑥ (생략)

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 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의

개 정 안
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
<u>법 제20</u> 조에
따라
1.~11. (현행과 같음)
12. 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
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이
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: 골
프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
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·
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
<u>연간이용일수</u>
②~⑥ (현행과 같음)
제9조(세율)

현 행

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제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세율	<u>18000원</u>	<u>12000원</u>	8000원	<u>6000원</u>	<u>3000원</u>

제8장 <u>지방소득세(소득분)</u>
제16조(세율) <u>법 제89조제2항에 따</u> 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개 정 안

-----.

구분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제5종
세율	<u>27,000원</u>	18000원	12000원	9000원	<u>4500원</u>

제8장 지방소득세

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-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-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지방세법」 ○ 제20조(신고 및 납부) ○ 제34조(세율) ○ 제92조(세율) ○ 제103조의 3(세율) ○ 제103조의 20(세율) "내용은 별지 작성"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투이사항	"해당사항 없음"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「지방세법」

제20조(신고 및 납부)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 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②~④ (생 략)

제34조(세율)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 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	인구 50만 명 이상 시	그 밖의 시	군
제1종	67,500원	45,000원	27,000원
제2종	54,000원	34,000원	18,000원
제3종	40,500원	22,500원	12,000원
제4종	27,000원	15,000원	9,000원
제5종	18,000원	7,500원	4,500원

②~⑤ (생략)

제92조(세율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

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③~⑤ (생략)

제103조의3(세율) ①~③ (생략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103조의20(세율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 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○ 재정수반사항 없음.

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 취득시기 및 세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
- 요트회원권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은 우리 시에 요트장이 소 재하지 아니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
- 등록면허세(면허분)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는 1억원 미만(연간 총세수 2억원 규모)의 소액으로 미첨부함.
 - ※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이며, 군지역에서만 광역시세로서 우리 시는 강화·옹진군만 해당됨.

4. 작성자

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